

대구지방법원 2021. 3. 25 선고 2020가단125884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구

담당변호사 이원창

피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B

변론 종결 2021. 2. 18.

판결 선고 2021. 3. 25.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가. 소외 C과 피고 사이에 2020. 3. 23.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소외 C에게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2020. 3. 23. 접수 제50064호로 경료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등

소외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고 합니다)은 원고와 사이에 2016. 11. 30. 보증원금 432,000,000원, 보증기간 2016. 11. 30.부터 2017. 11. 29.까지(이후, 보증기한 2020. 11. 27.까지로 변경됨)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한 후,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해 원고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E은행에 제공하고 E은행으로부터 54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나. 구상약정 및 소외 C의 연대보증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위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될 당시, 소외 회사는 신용보증기간 중 신용보증원금의 범위 내에서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보증원금 및 이에 대한 종속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원고가 대위변제한 보증채무액 및 이에 대한 신용보증기금법, 동 시행령, 기금의 업무방법서 및 신용보증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원고가 정하는 이율의 지연손해금, 보증료, 과태료, 위약금, 원고의 구상채권 실행 또는 보전을 위하여 소요된 법적절차비용을 상환하기로 약정하였고,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소외 C은 그 신용보증약정의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하였다.

다. 원고의 대위변제 및 구상금 채권의 발생

소외 회사가 2020. 3. 17.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연체하여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소외 회사를 대위하여 2020. 7. 9. E은행에 394,261,045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원고는 소외 회사 및 C에 대하여 위 대위변제금 394,261,045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채권을 가지게 되었다.

라. C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법률행위

- 1) 피고는 2017. 6. 창립 이래 지속적으로 소외 회사와 거래해 오던 회사인데, 소외 회사가 수급받아 시공한 F 신축공사 현장에 2018. 9. 13.부터 2019. 3. 30.까지 사이에 전열교환기를 납품하여 설치해 주었고, 그 공사대금 중 일부인 47,7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다.
- 2) 소외 회사는 2020. 2. 5.에 위 미수금을 2020. 2. 29.까지 지급하기로 피고에게 약속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대표이사이던 C이 자신의 개인 소유인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함께 약속하였다.
- 3) 소외 회사가 2020. 2. 29.까지도 위 미수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C은 약속에 따라 2020. 3. 23.에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최고액을 57,240,000원으로 하고 채무자를 소외 회사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법률행위'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2020. 3. 23. 접수 제50064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쳐 주었다.

라. 채무자 C의 무자력

- 1) 이 사건 법률행위 당시에 C은 적극재산으로 이 사건 부동산과 제주 G콘도미니엄 H호실의 1/130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254,000,000원정도이고, 제주 소재 콘도미니엄 지분의 시가는 2,000,000원 남짓(부동산등기부상 확인되는 2016년 7월경 같은 지분의 거래가액임)이다.
- 2) 반면 당시 C은 원고가 신용보증한 E은행에 대한 4억 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외에도 I에 9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그 외 여러 금융기관들에도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채무가 적극재산을 압도적으로 능가하는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생략,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이 법원의 J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에 대한 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법률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위 인정사실에서 본 것처럼, 채무가 적극 재산을 압도적으로 능가하는 상태에 있던채무자 C이 거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제주 소재 부동산의 시가는 2,000,000원 남짓하여 큰 의미가 없다)에 대하여, 여러 채권자들 중의 1인일 뿐인 피고에 대한 기왕의 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하는 이 사건 법률행위는 원고를 포함하여 다른 채권자들을 해치는 전형적인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3. 피고의 선의 항변에 대하여

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법률행위 당시 C의 재산 상태에 대하여는 알지 못했고, 피고가 채권 추심을 위하여 당시 소외 회사가 수급받아 공사하고 있던 여러 공사 현장의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를 할 기색을 보이자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C이 자신의 개인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약속하게 되었으며, 그 후 그 약속에 따라 C이 이 사건 법률행위를 하게 된 것일 뿐이므로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다룬다.

나. 그러나 사해행위의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된다. 그리고 이 사건 법률행위 당시 C이 원고 및 다른 채권자들에게 부담하고 있던 채무의 규모가 아주 다액인 점, 피고와 소외 회사가 여러 해 동안 계속적으로 거래해 왔고 이 사건 법률행위의 피담보채무의 발생 시기는 늦어도 2019. 3. 31.경으로 이 사건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2020. 3. 23.로부터 거의 1년 전에 발생한 채무였던 점, 소외 회사가 E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의 이자지급을 연체하여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서 정한 보증사고가 발생한 때는 2020. 3.17.인데 그로부터 불과 1주일 정도 후에 이 사건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점 등의 여러사정을 고려하면, 피고가 위에서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추정이 반복될 수 없다.

다. 따라서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는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채권자인 원고의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에 따라 이 사건 법률행위를 취소함

이 사건 법률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데, 채권자인 원고가 이 사건 소송으로 그취소를 구하고 있으므로 이를 취소한다.

5. 취소의 효과- 피고의 원상회복의무

이 사건 법률행위가 취소됨에 따라, 수익자인 피고는 그 원상회복을 위하여 이 사건부동산에 대한 이

사건 근거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6. 결론

이에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수

별지 목록

부동산의 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대구광역시 동구 K에 있는 L

철근콘크리트구조 스라브지붕 12층 공동주택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대구광역시 동구 K 대729.6㎡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2층 M호

철근콘크리트구조 오피스텔 102.7358㎡ -이상-

